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의뢰인 : 수원지방법원
건명 : 2025타경50086(유일선 소유)
번호 : 삼창제 G20252-01038 호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 (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자)이 사용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 삼창감정평가법인
Samchang Appraisal Co., Lt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 8번길11
3층301호(도촌동, 씨앤씨프라자)

TEL.031-709-7100 / FAX.031-709-1727



(부동산) 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정현정 (인)

(주) 삼창 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장 양진규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액	일십육억이백삼십구만팔천팔백원정 (₩1,602,398,800.-)					
의뢰인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태형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경매18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유일선		감정평가조건	-		
물건목록 표시근거	귀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 01. 13	2025. 01. 13	2025. 01. 13	
감정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별	면적 (㎡) 또는 수량	종별	면적 (㎡)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623	토지	623	2,030,000	1,264,690,000
	건물	311.6	건물	311.6	-	337,708,800
	합계					₩1,602,398,800
	이	하	여	백		
심사 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감정평가사					(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대상물건 개요

대상물건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소재 "고기3리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건물)으로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의뢰된 법원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가.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제반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으며,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나. 감정평가조건

-

3.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관련 제 규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 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비교표준지 선정 :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2. 시점수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이용상황 별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 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할 것
 3. 지역요인 비교
 4. 개별요인 비교
 5. 그 밖의 요인 보정 :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할 것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절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건물을 감정평가 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위 규정에 따라,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감정평가하였으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각각 산출하고 비교함으로써 토지 감정평가액의 합리성 여부를 검토하였음.

다. 감정평가는 기본적으로 3방식(비교방식, 원가방식, 수익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정평가대상 건물은 건물만의 거래사례를 포착하는 것이 어려워 비교방식의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함. 또한 건물만의 임대사례를 포착하는 것이 어렵고 토지와 건물은 일체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수익방식의 적용 역시 적절하지 아니함. 따라서 건물은 그 구조, 규모, 용재, 내구년한, 현상, 이용, 관리상태, 유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원가법으로 감정평가 하였음.

4. 그 밖의 사항

가. 대상물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조경수, 조경석 등은 부가물로서,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나. 대상물건 건물은 공부상 ‘고기동 506-28번지, 동소 506-30번지, 동소 506-38번지, 동소 510-8번지’ 위 4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토지합병으로 인해 현황 ‘고기동 506-28번지’ 위 단일지상에 소재하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 바람.

다. 대상물건 건물 내부구조는 관계인 부재 및 잠금장치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탐문 및 건축물현황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대상물건의 확정

가. 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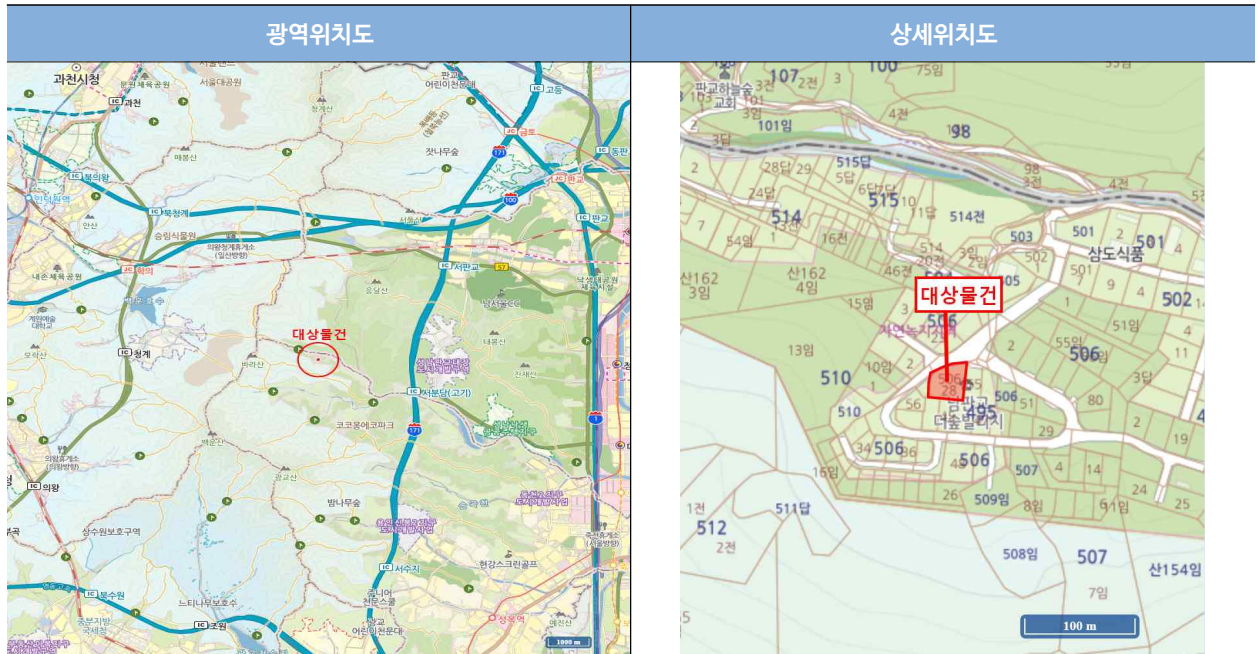
일련 번호	소재지	공부면적 (㎡)	사정면적 (㎡)	지목	용도 지역	이용 상황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개별공시지가 (원/㎡) (2024년)	비고
1)	고기동 506-28	623	623	대	자연녹지	단독주택	세로(가)	사다리 완경사지	768,200	-
합계	-	623	623	-	-	-	-	-	-	-

나. 건물

일련 번호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506-28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655번길 19)					
	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목구조			주용도	단독주택	
가)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율(%)	층수 (지하/지상)	사용승인일	증축일
		117.98	18.94	311.6	32.12	-1/2	2007.01.24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위치도



6. 기준시점 등

가.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2025년 1월 13일로 함.

나. 실지조사(2025년 1월 13일)를 통하여 대상물건의 이용상황과 공부와의 일치여부 및 지가수준을 확인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가. 비교표준지 선정(공시기준일 : 2024.01.01)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중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공법상 제한사항, 주위환경, 지목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음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음.

구분	소재지	면적 (㎡)	지목	용도 지역	이용 상황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표준지 A	고기동 495-45	292	대	자연녹지	단독주택	세로(가)	세장형 환경사지	776,000

위 치 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시점수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며,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을 산정하여 적용하되, 기준시점 당시에 당해월의 지가변동률이 조사·발표되지 아니하여 최종 발표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음.

구분	대상지역	기 간	지가변동률(%)	보정치(배)	비 고
표준지 A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녹지지역'	2024.01.01~2025.01.13	2.826	1.02826	2024년 11월 연장적용

다. 지역요인 비교

결정의견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 동일함.
지역요인 비교치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라. 개별요인 비교

■ 주택지대[일련번호1)/표준지A]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격 차 율 (대상/표준지A)	비 고
가 로 조 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계통 및 연속성 등	1.00	유사함.
접 근 조 건	교통시설과의 거리	인근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1.00	유사함.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 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환 경 조 건	일조 등 자연환경	일조, 통풍,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1.00	유사함.
	인근환경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인근 토지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등		
획 지 조 건	면적, 접면 너비,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형상, 깊이 등	1.00	유사함.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등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등		
행 정 적 조 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1.00	유사함.
		입체이용 제한 등		
기 타 조 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유사함.
개별요인 비교치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마. 그 밖의 요인의 보정

1)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대법원판례(2003다38207, 2004.05.14) 등에 근거하여 인근 지역의 전반적인 가격수준과 인근지역의 감정평가전례를 참작하여 감정평가액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장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고자 함.

2) 감정평가전례 및 거래사례

가) 감정평가전례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화시스템 등)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 지역	이용 상황	감정 평가 목적	기준시점	토지단가 (원/㎡)	기준시점의 개별공시지가 (원/㎡)	격차율
①	고기동 ○○○	대	393	자연 녹지	단독 주택	법원경매	2023.11.16	1,970,000	766,100	2.57
②	고기동 ○○○	대	222	자연 녹지	단독 주택	법원경매	2024.05.14	1,960,000	768,200	2.55
③	고기동 ○○○	대	307	자연 녹지 보전 녹지	주거 기타	담보	2023.04.07	1,890,000	762,700	2.48

나) 거래사례 내역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지목	용도 지역	토지면적 (㎡)	이용 상황	거래금액 (원)	토지거래단가 (원/㎡)	거래시점 (계약일기준)	거래시점의 개별공시지가 (원/㎡)
㉠	고기동 ○○○	대	자연녹지	402	단독 주택	1,150,000,000 (건물포함)	약 2,010,000	2024.04.22	760,400
비고	<토지단가 산출개요> ■ 건물 개요 : 통나무구조(사용승인일 : 2017.02.03), 면적 : 165.68㎡ ■ 토지 추정단가 : $\{[1,150,000,000\text{원} - (2,400,000\text{원}/\text{㎡} \times 43/50 \times 165.68\text{㎡})] / 402\} \approx 2,010,000/\text{㎡}$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인근지역 지가수준 및 경매낙찰가율

가) 지가수준

용도지역	용도	도로조건	지가수준	조사처
자연녹지	단독주택	세로변	1,950,000원/㎡-2,100,000원/㎡ 수준	본건 지역의 지가수준은 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나) 경매낙찰가율(1년간 평균낙찰가율)

(출처: 인포케어, www.infocare.co.kr)

지역통계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낙찰가율 (%)	낙찰률 평균 (%)	낙찰건수 (건)	낙찰가율 (%)	낙찰률 평균 (%)	낙찰건수 (건)	낙찰가율 (%)	낙찰률 평균 (%)	낙찰건수 (건)
주택/단독주택	66.90	69.16	405	81.20	81.20	1	0	0	0

4)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가) 산정방법

비교사례를 기준으로 기준시점의 표준지단가를 산정하고 이를 비교표준지의 기준시점단가와 비교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정하였음.

$$\blacksquare \text{ 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비교사례 단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text{표준지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1) 비교사례의 선정

선정 비교사례	감정평가전례 ①
비교사례 선정의견	상기의 인근 지역 내 감정평가전례 및 거래사례 중 용도지역, 이용상황, 효용성 및 감정평가 목적 등을 감안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을 위한 비교사례로 위의 사례를 선정하였음.

(2) 시점수정

구분	대상지역	기 간	지가변동률 (%)	보정치(배)	비 고
비교사례 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녹지지역'	2023.11.16~2025.01.13	3.160	1.03160	2024년 11월 연장적용

(3) 지역요인 비교

결정의견	비교표준지는 비교사례와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지역요인 비교치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개별요인 비교

■ 주택지대 [표준지A/비교사례①]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격 차 율 (표준지/비교사례①)	비 고
가 로 조 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계통 및 연속성 등	1.00	유사함.
접 근 조 건	교통시설과의 거리	인근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1.00	유사함.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 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환 경 조 건	일조 등 자연환경	일조, 통풍,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1.00	유사함.
	인근환경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인근 토지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등		
획 지 조 건	면적, 접면 너비,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형상, 깊이 등	1.00	유사함.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등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등		
행 정 적 조 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1.00	유사함.
		입체이용 제한 등		
기 타 조 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유사함.
개별요인 비교치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비교사례기준 비교표준지 단가

구분	비교사례	비교사례 단가(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사례 기준 비교표준지단가(원/㎡)
표준지 A	①	1,970,000	1.0316	1.000	1.000	2,032,252

(6) 격차율산정

$$\frac{\text{비교사례① 기준 비교표준지단가}}{\text{표준지공시지가A} \times \text{시점수정}} = \frac{2,032,252}{776,000 \times 1.02826} \approx 2.547$$

다)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보 정 내 용	표준지	결정 보정치
인근 감정평가전례, 거래사례, 인근지역 지가수준, 경매낙찰가율 및 대상토지의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A	2.54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일련 번호	표준지 기호	표준지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비고
1)	A	776,000	1.02826	1.000	1.000	2.54	2,026,741	2,030,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가. 거래사례 선정

1) 선정기준

선정 비교사례	거래사례 ㉠
비교사례 선정의견	토지만의 거래가액이 분리 가능한 거래사례로서 인근지역 내의 실거래 중 용도지역, 실제 이용상황, 공법상 제한, 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위의 거래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음.

2) 거래사례 내역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지목	용도 지역	토지면적 (㎡)	이용 상황	거래금액 (원)	토지거래단가 (원/㎡)	거래시점 (계약일기준)	거래시점의 개별공시지가 (원/㎡)
㉠	고기동 506-24	대	자연녹지	402	단독 주택	1,150,000,000 (건물포함)	약 2,010,000	2024.04.22	760,400
비 고	<토지단가 산출개요> ■ 건물 개요 : 통나무구조(사용승인일 : 2017.02.03), 면적 : 165.68 ■ 토지 추정단가 : $[(1,150,000,000\text{원} - (2,400,000\text{원}/\text{㎡} \times 43/50 \times 165.68)) / 402] \approx 2,010,000/\text{㎡}$								

나. 사정보정

결정의견	선정된 비교사례에는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도의 사정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음.
사정보정 비교치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시점수정

구분	대상지역	기 간	지가변동률(%)	보정치(배)	비 고
비교사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녹지지역'	2024.04.22~2025.01.13	1.993	1.01993	2024년 11월 연장적용

라. 지역요인 비교

결정의견	대상토지와 비교사례는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지역요인 비교치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마. 개별요인 비교

■ 주택지대[일련번호1)/거래사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격 차 율 (대상/사례㉠)	비 고
가 로 조 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계통 및 연속성 등	1.00	유사함.
접 근 조 건	교통시설과의 거리	인근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1.00	유사함.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 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환 경 조 건	일조 등 자연환경	일조, 통풍,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1.00	유사함.
	인근환경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인근 토지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등		
획 지 조 건	면적, 접면 너비,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형상, 깊이 등	1.02	대상물건이 형상에서 우세함.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등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등		
행 정 적 조 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1.00	유사함.
		입체이용 제한 등		
기 타 조 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유사함.
개별요인 비교치			1.02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일련 번호	비교사례 기호	비교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비고
1)	㉠	2,010,000	1.000	1.01993	1.000	1.020	2,091,060	2,090,000	-

3. 시산가액 검토 및 토지 감정평가액의 결정

가. 시산가액

일련번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원/㎡)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원/㎡)	결정단가 (원/㎡)
1)	2,030,000	2,090,000	2,030,000

나. 시산가액의 검토 및 감정평가액의 결정

1) 시산가액의 검토 및 감정평가액의 결정에 관한 의견

상기와 같이 산출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단가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단가가 상호간에 유사하여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해 산출된 시산가액을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2)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

일련번호	소재지	공부면적 (㎡)	사정면적 (㎡)	토지단가 (원/㎡)	감정평가액 (원)	비고
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506-28	623	623	2,030,000	1,264,690,000	-
합 계		623	623	-	1,264,690,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Ⅲ. 대상건물의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건물의 개요

일련 번호	주 용 도	구 조	면적(㎡)	비고(층수)
가)	단독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목구조	311.6	-1/2

2. 재조달원가 결정

건물의 재조달원가(표준단가+보정단가)는 한국부동산연구원의건축물 재조달원가 자료집 및 한국부동산원의 건물 신축단가표를 참고하되, 대상건물의 시공의 정도, 관리 및 이용상태, 유지·보수의 정도,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가. 한국부동산연구원의건축물 재조달원가 자료집 및 한국부동산원의 건물신축단가표

분류번호	용도	구조	급수	표준단가 (원/㎡)	내용년수
1-1-5-8	일반주택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위 아스팔트싱글	2	1,978,000	50 (45~55)

나. 부대설비 내역

부대설비 보정이란 상기 건물표준단가와 대상건물이 갖는 전기, 기계설비 수준 및 마감재 등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대상건물의 적정 재조달원가를 산정함.

보정 항목	비고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1/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재조달원가 결정

일련 번호	층	용도	재조달원가 (원/㎡)	시공의 정도 및 관리상태	비 고
가)	1층, 2층	단독주택	2,000,000	중	-
	지1층	단독주택, 주차장	1,000,000	중	-

3. 감가수정 및 건물단가의 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대상건물의 경제적 내용년수를 기준으로 감가수정하였음(정액법).

일련 번호	층별	재조달원가 (원/㎡)	잔존 내용년수	내용 년수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사용승인일
가)	1층, 2층	2,000,000	33	50	1,320,000	1,320,000	2007.01.24
	지1층	1,000,000	33	50	660,000	660,000	2007.01.24

4. 대상건물의 감정평가액

일련 번호	층별	공부 면적(㎡)	사정 면적(㎡)	적용단가 (원/㎡)	감정평가액 (원)	비 고
가)	1층, 2층	200.08	200.08	1,320,000	264,105,600	-
	지1층	111.52	111.52	660,000	73,603,200	-
합 계		311.6	311.6	-	337,708,8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와 원가법에 의한 건물단가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 산정에 적용할 가액으로서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 및 조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구 분	감정평가액(원)	비 고
토 지	1,264,690,000	상세내역은 명세표 참조
건 물	337,708,800	
합 계	1,602,398,800	-

끝.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용도지역 구조	면적 (㎡)		감정평가액		비고
					공부	사정	단가(원/㎡)	금액(원)	
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506-28	대	자연녹지지역	623	623	2,030,000	1,264,690,000	
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655번길 19	506-28 위지상	단독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목구조 (철근)콘크리트벽 지상2층					
			단독주택	1층 일반목구조	117.14	200.08	1,320,000	264,105,600	2,000,000 x33/50
			단독주택	2층 일반목구조	82.94				
			단독주택, 주차장	지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111.52	111.52	660,000	73,603,200	1,000,000 x33/50
	소계							₩1,602,398,800	
	합계			이 하		여		₩1,602,398,800.-	백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4. 인접 도로상태
7. 공부와의 차이

2. 교통상황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8. 기타참고사항 (임대관계 및 기타)

3. 형태 및 이용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소재 '고기3리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주위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완경사의 사다리형 토지를 평지 조성하였으며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대상물건 북측으로 노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4. 인접 도로상태
7. 공부와의 차이

2. 교통상황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8. 기타참고사항 (임대관계 및 기타)

3. 형태 및 이용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미상임.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4. 부합물 및 증물

2. 이용상태
5. 공부와의 차이

3. 설비내역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목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2층 건으로서,
외벽 : 치장벽돌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2. 이용상태

1,2층: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지1층: 단독주택, 주차장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4. 부합물 및 증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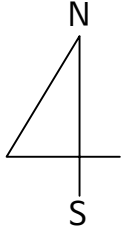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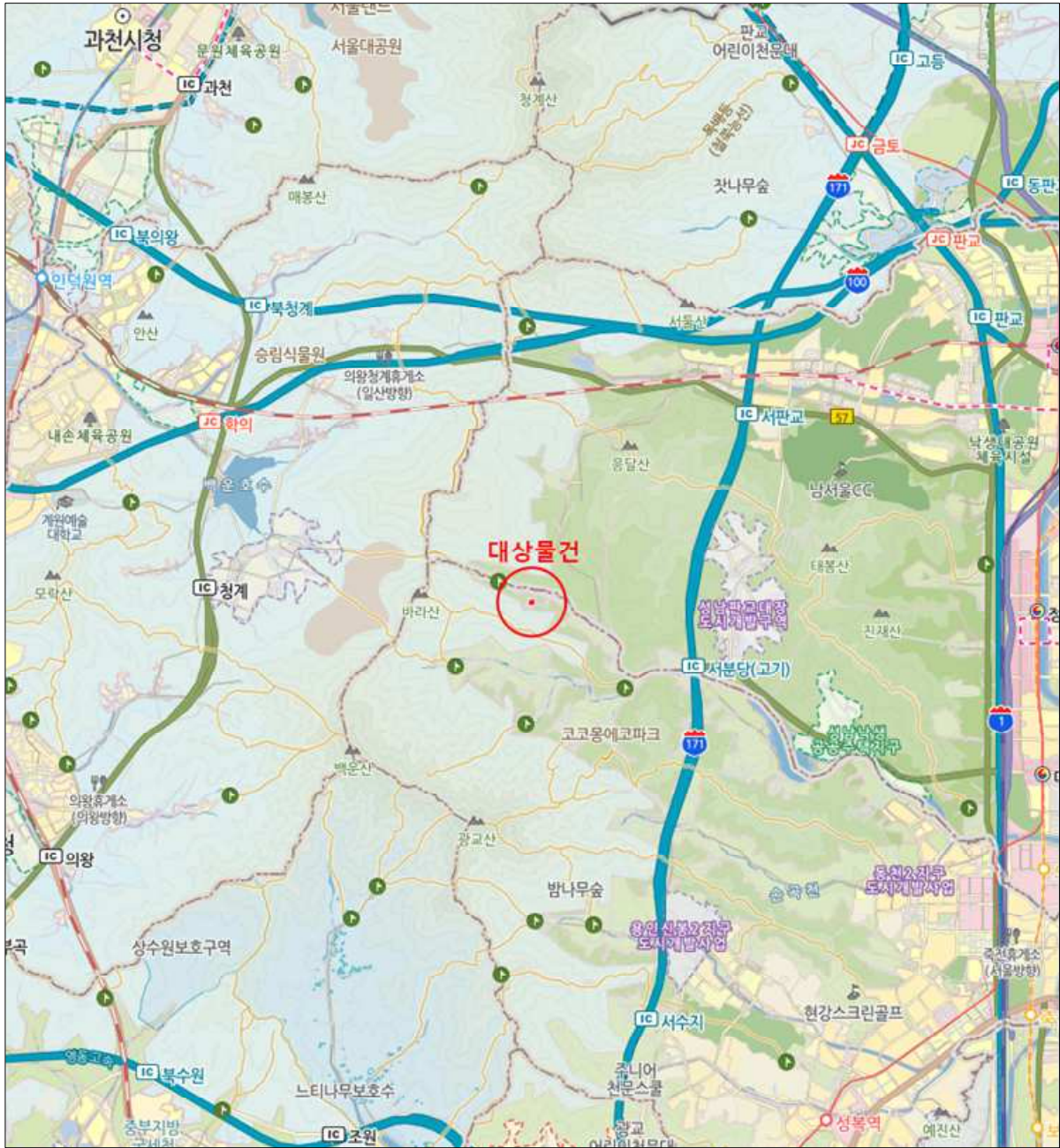
임대미상임.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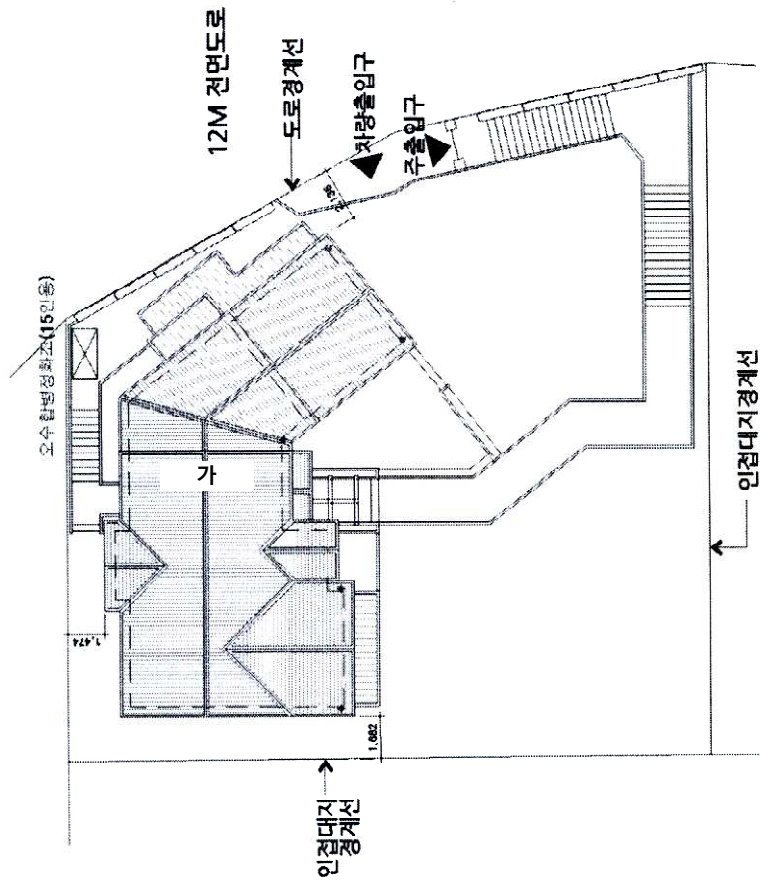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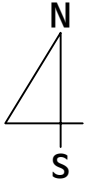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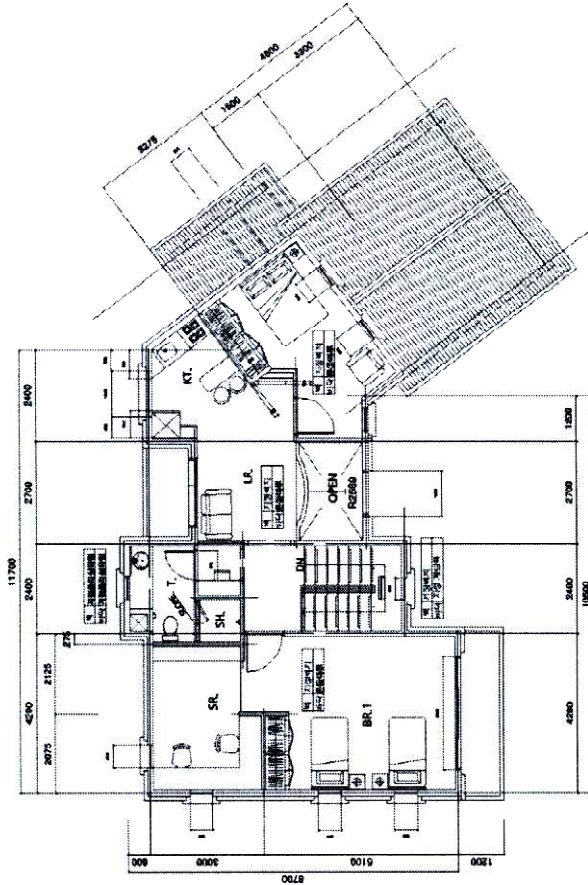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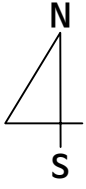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506-28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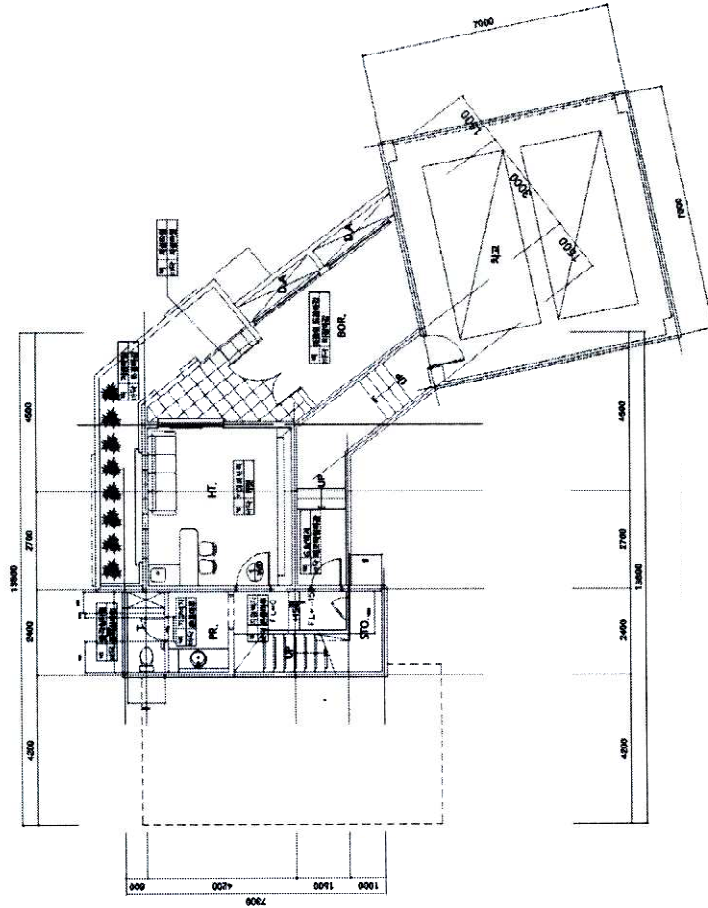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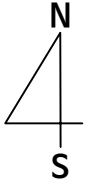


건물이용상황 및 임대상황



(가)2층 (공부상면적 : 82.94㎡)

건물이용상황 및 임대상황



(가)지1층 (공부상면적 : 111.52㎡)

사 진 용 지



[주위환경]

사 진 용 지



[전경1]

사 진 용 지



[전경2]

사 진 용 지



[전경3]



(주) 삼창 감정평가법인

수 신 :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태형
(경 유)
참 조 : 경매18계

제 목 : 감정평가 의뢰에 대한 회신

1. 우리 법인의 업무에 항상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2025.01.09자로 귀법원께서 제 2025타경50086호로 의뢰하신『2025타경50086(유일선 소유)』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감정평가하여 회보합니다.

3. 우리 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오니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유선/휴대폰) / E-mail
(감정평가서번호, 채무자명 또는 의뢰인명 기재 요망)

붙 임 : 1. 감 정 평 가 서 1부
2. 수 수 료 청 구 서 1부 끝.

(주)삼창감정평가법인
경 기 지 사 장

수수료 청구서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태형 귀하

삼창 제 G20252-01038 호

— 金일백칠십이만일천오백원整

₩1,721,500

의뢰문서번호 : 2025타경50086

의뢰일자 : 2025.01.09

건명 : 2025타경50086(유일선 소유)

청구내역

과목	금액	비고
가. 평가수수료	1,301,535	(1,145,000+(602,398,800 x 8/10,000))x 0.8=1,301,535
나. 여비	244,000	
물건조사비	10,000	【물건조사비】1동 x 10,000
공부발급비	2,400	【공부발급비】 토지이용계획 1,000 / 토지등기부 700 / 건물등기부 700
임대차조사비		
기타실비	8,000	【기타 실비】 사진 4장 x 2,000원
특별용역비		
소계	264,400	
공급가액	1,565,000	* 1,000원미만절사
부가가치세	156,500	
합계	1,721,500	
기납부 착수금		
정산청구액	1,721,500	

위 금액을 수수료로 청구하오니 기납부착수금을 뺀 금액을 아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금처 ※

※ 사업자등록번호(공급자) : 129-85-12634

※ 송금시 입금계좌 메모란에 「의뢰인 또는 채무자」 기재 바람.

농협은행-분당NH금융플러스센터 : 242-17-000112

(주)삼창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

(주)삼창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장